교육 영상 시연용 가상 자료 — 회사·인물·금액은 모두 지어낸 것입니다

창고 보관 계약서

온누리유통(가명) 요청 양식 · 계약일 2025년 8월 25일

온누리유통 주식회사(가명, 이하 «갑»)와 한결물류 주식회사(가명, 이하 «을»)는 상품 보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의 상품을 을의 이천 물류센터에 보관하고 입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2025년 9월 1일부터 2년으로 하며, 기간이 끝나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

제3조 (보관 업무)
을은 갑의 상품을 입고·보관·출고하고, 매월 말일 기준 재고 현황을 갑에게 알린다.

제4조 (보관료와 지급)
① 보관료는 별지 단가표에 따른다.
② 을은 매월 말일에 보관료를 청구하고, 갑은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5조 (멸실·훼손 배상)
을의 잘못으로 상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되면 을은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배상액은 사고가 난 달 기준 보관료 3개월분을 넘지 않는다.

제6조 (보험)
갑은 보관 상품에 대해 화재보험에 가입한다.

제7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 확산 등 어느 쪽도 막을 수 없는 사유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 (비밀 유지)
양쪽은 계약 중 알게 된 상대방의 정보를 계약 종료 후 2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다.

제9조 (계약 해지)
한쪽이 계약을 어기고 서면으로 고칠 것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고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쪽이 협의한다.

갑: 온누리유통 주식회사 (가명) 대표이사 (서명 생략)	을: 한결물류 주식회사 (가명) 대표이사 (서명 생략)